

불임2

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우수인재 고용기업 안내사항

가. 취업

- (업종)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(취업 확정) ※ 아래 참고자료 참조
- (지역) 근무처 사업체가 추천지역 내 소재
 -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(기초자치단체)일 것
- (근로계약)
 -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확인
 -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,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
 -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(단, 사업장휴·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 허용)

나. 고용주 요건

-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
 -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·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,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「출입국관리법」 제7조의2(허위초청), 제12조의3(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·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)*, 제18조제3항(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), 제18조제4항(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·권유), 제18조제5항(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), 제21조제2항(근무처 변경·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), 제26조(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), 제33조의3제1호(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·여권 갈취)

*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

- ②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,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」 및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또는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④ 「근로기준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⑤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「출입국관리법」 제9조제2항(사증발급인 정서 대리신청)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
- ⑥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9조(외국인고용주 신고의무) 또는 제19조의4(유학생 초청기관장의 신고의무)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다. 추가안내

- 동일 국적 추천 비율 제한
 - 특정 국적 비율이 기초지자체별 배정인원의 40%를 넘지 않도록 추천
- 동일업체 고용인원 제한
 -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상 내국인 고용인원^{*}의 50%(최대20명)까지 허용

* 최저임금을 총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

【참고사항】 2024 지역우수인재 취업허용 업종

지역우수인재(F-2-R) 지자체별 취업 허용 업종

(‘24. 1. ~ ’24. 12. 31.)

대상지역	업종
경북	<p><기초공통 취업허용 업종 - 26개></p> <p>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</p> <p>농업(01), 식료품 제조업(10), 음료제조업(11), 섬유제품 제조업;의복 제외(13),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 제외(16), 페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17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(20)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21)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2)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23), 1차 금속 제조업(24),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(25)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6), 전기 장비 제조업(28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0), 기타 제품 제조업(33), 도매 및 상품 중개업(46), 소매업:자동차 제외(47), 숙박업(55), 음식점 및 주점업(56) 연구개발업(70),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(84), 교육 서비스업(85), 보건업(86), 사회복지 서비스업(87)</p> <p><기초공통 창업허용 업종 - 14개></p> <p>농업(01), 임업(02), 식료품 제조업(10), 섬유제품 제조업;의복 제외(13), 의복,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(14),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(15), 도매 및 상품 중개업(46), 소매업:자동차 제외(47), 숙박업(55), 음식점 및 주점업(56),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(62), 정보서비스업(63), 교육 서비스업(85), 창작,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90)</p>

*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허위 업종 간 변경만 가능

- 예 10. 식료품 제조업 : 101 도축,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↔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(O)
- 11. 음료 제조업 : 111 알코올 음료 제조업 ↔ 112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및 얼음 제조업(O)
- 10. 식료품 제조업 ↔ 11 음료제조업 (X)

*간편업종확인 : 근로복지공단 [*선택: 고용선택 > 사업장명 or 사업자등록번호 > 지사 찾기 > 가입조회하기]

